

법규 준수여부 평가서

평가자

관장소장

원장 :

평가 일시 : 20. 6. 14

환경안전보건법규	법규 조항 평가 항목	관리 방법	실행부서	평가결과		비고
				Y	N	
환경안전보건법규	법규 조항 평가 항목	관리 방법	실행부서	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	Y	
				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	Y	
				제16조 관리감독자	Y	
				제17조 안전관리자	N/A	
				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	Y	
				제32조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	Y	
				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	Y	
				제37조 안전보건계획의 설치 부칙	Y	
				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응급 조치 및 보고	Y	
				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	Y	
				제129조~131조 건강진단	Y	
				제25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	Y	
				제99조 유해,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	Y	
				제26조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	Y	
				제37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	Y	
				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	법규 조항 평가 항목	관리 방법
제89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	Y					
제157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	Y					
제3조 전도의 방지	Y					
제8조 조도	Y					
제9조 작업발판	Y					
제16조 위험물통의 보관	Y					
제21조 통로의 조명	Y					
제239조 위험물통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	Y					
제42조 추락의 방지	Y					
제33조 보호구의 관리등	Y					
제188조 피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	Y					
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	Y					
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Y					
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	Y					
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	법규 조항 평가 항목	관리 방법	실행부서			
				제21조 통로의 조명	Y	
				제239조 위험물통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	Y	
				제42조 추락의 방지	Y	
				제33조 보호구의 관리등	Y	
				제188조 피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	Y	
				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	Y	
				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Y	
				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	Y	
				제16조 위험물통의 보관	Y	
				제21조 통로의 조명	Y	
				제239조 위험물통이 있는 장소의 화기등의 사용금지	Y	
				제42조 추락의 방지	Y	
				제33조 보호구의 관리등	Y	
				제188조 피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	Y	
				제189조 섬유로프 등의 점검	Y	
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	Y					
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	Y					

중대제처법	유	제7조 중대산업제해의 양벌규정	그 위반 행위 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 벌금 부과	전부서	✓	
	유	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간	중대제처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 이수(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)	전부서	✓	
중대제처법	유	제13조 중대산업제해 발생사실 공표	중대산업제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의 명칭, 발생 일시와 장소, 제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	전부서	✓	
	유	제9조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	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전부서	✓	
	유	제10조 중대시민제해 발생 사업주,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	양벌 적용	전부서	✓	
	유	제11조 중대시민제해의 양벌규정		전부서	✓	
	유	제4조 중대산업제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	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외 8개 항	전부서	✓	
중대제처법 시행령	유	제5조 중대산업제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	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 점검 외 4개 항	전부서	✓	
	유	1.법 제36조,시행령2조:보통금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	산업제해 조사표 유지	전부서	✓	
	유	2.법 제37조: 업무상 제해의 인정기준	부적합 및 산재 발생 대장 보유	전부서	✓	
산업제해보상보험법	유	3.법 제40조: 요양급여		전부서	✓	
	유	1.법 제17조: 근로조건외 명시	근로계약서			
	유	2.법 제23-24조: 해고등의 제한				
	유	3.법 제41조,시행령 제20조: 근로자의 명부 및 기재사항		전부서	✓	
	유	4.법 50조:근로시간	-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 시간을 초과금지. (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 초과 금지).			
화재예방,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	유	1.소화기 구비 및 배치 : 배치도	수시점검	전부서	✓	
	유	2.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	1회/년			
	유	3.소방훈련(회제)	2회/년			
	유	4.소방기구 점검(작동상태 소화기 점검기록 유지)				
폐기물관리법	유	1.법 제12조,령 제6조,규칙 6조: 폐기물상(정의),분리수거	1. 폐기물의 처리기준	전부서	✓	
	유	2. 제13조,령 제7조, 규칙 제9조~11조	- 지정 폐기물 : 폐오일, 폐페인트(액상)			
	유	3.법 제60,61조	- 사업장 일반폐기물 : 폐플라스틱, 폐비닐,폐장갑,잡쓰레기 등 - 재활용 폐기물 : 폐전선,폐금속, 폐종이, 캔, 병 등(분리수거)	전부서	✓	
전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	무	1.제20조 제1항, 제2항	유출되어 주변환경을 오염, 전류성유기오염물질(중금속,사고신고)	전부서	✓	
	무	2.제22조	전류성유기오염물질(수집,운반,보관,처리)			
	무	3.제24조 2항	전류성유기오염물질(신고)	전부서	✓	